

	안산대학교출판부규정	규정번호	3-5-6
		제정일자	2002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재 및 부교재를 포함한 각종 인쇄물의 제작 배포를 지원하는 안산대학교출판부(이하“출판부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출판부의 사업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 및 부교재를 인쇄하여 유·무상으로 공급하고 발생한 수익금 처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교재 및 부교재
2. 일반 교양도서
3. 학술도서
4. 기타 출판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출판물

제3조(위원회) 대학 출판물의 심의, 편집, 인쇄, 배포 등 출판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출판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한다.
2. 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출판물심의) 교재 및 부교재를 출판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판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.

1. 출판물 의뢰서[별지제1호서식] 1부.
2. 원본 원고 2부.

제5조(제작 및 공급) 출판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원고의 출판은 출판부에서 지정한 인쇄업체와 저자가 책임지고 교정, 편집, 제작하여 계획된 일정에 지장 없도록 공급한다.

제6조(출판물표기) ① 출판물의 표기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발행인은 안산대학교 총장으로 하며 발행처는 안산대학교출판부로 표기 한다.

② 출판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출판물은 안산대학교 또는 안산대학교출판부로 명칭을 사용 또는 표기 할 수 없다.

제7조(저작권) ① 대학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의 저작권 소유는 출판부에 있다.

②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분쟁의 발생시 모든 책임은 저자가 진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